

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5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안산시 구청설치에 대한 기구·정원이 행정자치부 제2002-97호(2002. 08.17)로 승인됨에 따라 구청설치에 대비하여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이 조례 규정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민원실 전용 공인을 민원실전용 및 ○○민원전용으로 세분화 함 (안 제2조).
나. 전자공인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(안 제3조의2).
다. 구청설치에 따라 구청장을 삽입 함 (안 제4조, 제13조).
라. 공인의 신조(개각), 폐기 등 관리를 시·구공인업무담당과장이 담당토록 함 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1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10,000천원 (40,000원×250개)

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

- 행정자치부 제2002-97호 - 구청승인(2002. 8. 17)

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시장은 창구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“민원실 전용”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민원실 전용” 또는 “○○민원전용”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.

④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장·구청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,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전자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적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제4조제2항중 “안산시장”을 “시장·구청장”으로 한다

제6조제1항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시·구공인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·사업소장·동장 및 시본청, 사업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시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, 구·동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구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신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,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시·구공인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시·구공인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공인의 개각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신청을 하고, 해당 공인은 시·구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2항중 “총무과장”을 “공인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중 “시장”을 “시장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이 범 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총무담당 안 상 철
	담당자 성명·전화	임 준 수 (행정 2118)

<별표 1>

공인의 규격

공인의 구분	규격
1. 합의제기관의 공인	3.6센티미터 정사각형
2.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. 시장 나. 2급 또는 3급공무원인 사업소 및 소속기관장 다. 4급 또는 5급공무원인 사업소 및 소속기관장 라. 6급 또는 7급공무원인 사업소 및 소속기관장	2.7센티미터 정사각형 2.4센티미터 정사각형 2.1센티미터 정사각형 1.8센티미터 정사각형
3.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의 공인	1.6센티미터 정사각형
4.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. 징수관, 경리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지출원 및 그외 분임자 나. 출납원 및 그외 분임자 (수입금, 일상경비, 세입세출외현금, 물품등)	2.0센티미터 정사각형 1.8센티미터 정사각형
5. 철인 : 시본청, 사업소, 구본청의 철인	지름 2.0센티미터 정사각형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공인의 종류 및 비치·사용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은 창구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“민원실 전용”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“민원실 전용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④ <u>시장과 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시장과 동장간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과 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“중계민원전용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 (공인의 종류 및 비치·사용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창구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“민원실 전용”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“민원실 전용” 또는 “○○민원전용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전 각 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3조의2 (특수공인) (본문 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3조의2 (특수공인) ① (현행 본문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·구청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,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의 전자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(글씨와 규격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<u>안산시장</u>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·세로 각각 1.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 (글씨와 규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 <u>시장·구청장</u> _____ _____ _____</p>
<p>제6조 (공인의 신조개각) ① 공인신조, 개각은 <u>총무과장이</u> 이를 새겨 교부한다. ②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 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6조 (공인의 신조개각) ① _____ <u>시·구공인업무 담당과장</u> _____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·사업소장·동장 및 시보청, 사업소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시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, 구·동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신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③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,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 (공인대장) <u>총무과장은</u>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 (공인대장) <u>시·구공인업무 담당과장</u> _____ _____ _____</p>
<p>제8조 (인영의 보존) <u>총무과장은</u>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 (인영의 보존) <u>시·구공인업무 담당과장</u> _____ _____ _____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<p>제11조 (공인의 폐기) ① 공인은 개각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이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 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3조 (공인관수자)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제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.</p>	<p>제11조 (공인의 폐기) ① 공인의 개각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 신청을 하고, 해당 공인은 시·구공인 업무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이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인업무담당과장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 (공인관수자) ————— 시장·구청장————</p>			
[별표1] 공인의 규격(제4조관련)	[별표1] 공인의 규격(제4조관련)			
공인의 구분	규격			
2. 사업소장 및 소속 기관의 공인 <u>〈신설〉</u>	<p>가.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사업소 및 소속기관장 나. 4급 또는 5급 공무원인 사업소 및 소속기관장 다. 6급 또는 7급 공무원인 사업소 및 소속기관장</p> <p>5. 철인 가. 시보첨의 철인 나. 사업소의 철인</p>	<p>지름 2.4센티미터 정사각형</p> <p>지름 2.1센티미터 정사각형</p> <p>지름 1.8센티미터 정사각형</p> <p>지름 20센티미터 정사각형</p> <p>지름 20센티미터 정사각형</p>	<p>2.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의 공인 가. 시장</p> <p>나.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사업소 및 소속기관장</p> <p>다. 4급 또는 5급 공무원인 사업소 및 소속기관장</p> <p>라. 6급 또는 7급 공무원인 사업소 및 소속기관장</p> <p>5. 철인 : 시보첨, 사업소, 구보첨의 철인</p>	<p>지름 2.7센티미터 정사각형</p> <p>지름 2.4센티미터 정사각형</p> <p>지름 2.1센티미터 정사각형</p> <p>지름 1.8센티미터 정사각형</p> <p>지름 2.0센티미터 정사각형</p>